

환경청 보도자료

'89주요업무계획

1. 하천 및 호소수질의 집중정화

- ◇ 전국 하천 환경을 본래의 상태로 회복
- ◇ 양질의 상수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

가. 오염우심하천의 집중정화

- 오염요인별 정화대책 실시
- 하천자율능력제고를 위한 하상정비(51km)
- 퇴적오니 준설(63km)
- 오수차집 분리관 설치(35km)
- 하천유지수 확보를 위한 양분대책 추진(금호강 조사)
- 오염우심하천 정화사업의 년차적 추진(89억원)
- 계속지역 : 대전금호강, 안양천, 팽주천, 춘천 공지천, 전주천 등 5개소(47억원)
- 신규지역 : 의정부 중랑천, 용인 경안천, 부산 학장천, 이리 유천, 순천 동천 등 5개소(42억원)
- 공단 및 농공단지 오·폐수처리시설 확충(136억원)
- 이리·여천공단 증설, 농공단단 신설(2년차)
- 농공지구 오수처리장 건설(원성군 문막 등 19개소)

나.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

- 주요상수원(호소) 특별관리대책
- 팔당, 대청호 주변의 특별관리구역지정
- 주요호소별 수질기준 및 적용 등급설정
- 상수관리체계의 개선방안 강구
- 상수취수원 수질감시기능 강화
 - 수질측정망 확충 운영(71개→126개 지점)

- 수질측정망 운영체제의 효율성 제고
 - 하천수 중심→용수목적별
- 다원화된 상수관리체제 개선
 - 상수원 수질관리와 보호구역지정 기능간의 연계
- 축산폐수 등 상수오염원 관리 철저
 - 시설규제 강화(축사면적과 사육두수 기준적용)
 - 상수원 영향권내의 오염행위에 대한 특별단속
- 호소수질연구소 설치 운영(국립환경연구소 부설)
- 전국 호소에 적용가능한 오염방지기술 개발
 - 오염경로 구명 및 방지대책 연구
- 연구소발족('88. 12. 31), 운영 활성화
 - 양평균 팔당소재, 대지 8,240평, 연구인력 18명

다. 연안오염방지 대책

- 항만 등 주요연안에 대한 특별관리
- 특별관리해역 지정 확대(4개→7개해역)
 - 추가지정 : 인천, 군산, 목포
- 특별관리해역내 오염행위 규제강화
- 해수수질 측정망 확충
- 마산만 퇴적오염물질 준설(100만톤)

라. 토양오염방지 및 유해화학물질관리 강화

- 토양환경기준의 제정
- 토양중 유해중금속함유 기준 설정
- 설정항목 : 카드뮴 등 중금속(8종) 및 산도
- 농약의 과오용으로 인한 피해방지
- 파라치온 등 맹독성 또는 고독성 농약사용 억제
- 농약의 취급제한강화 및 안전사용기준 확대
-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확립
- 유해성 화학물질 사용제한 강화
 - 독극물 취급제한 품목 : 27품목→42품목
- 유해성 화학물질의 조사 강화
 - 조사대책 화학물질 : 53종→73종

2. 대기오염요인의 근원적 저감

- ◇ 오염요인에 대한 원천적 시책추진
- ◇ 자동감시기능의 강화로 오염우심지역 해소

가. 연료개선으로 오염발생 억제

- 청정연료 사용의 무화
 - 서울지역에서 수도권 일원으로 확대
 - 업무, 영업, 공동시설외에 아파트단지 추가
 - 연료대체효과 증진을 위한 대책추진
 - LNG가격인하 : 254원/m³→222원/m³(13%)
 - 보일러시설 대체소요자금 융자제도 개선등
- 저유황유 공급확대
 - 소규모 열공급시설에 경유사용확대 유도
 - 신규시설 경유사용 의무화등 사용율 제고
 - 정유회사 탈유황시설의 계속적 설치
 - 유공, 경인에너지등(90천바렐/日)
- 석탄등 고체연료 및 불량연료 사용규제 강화
 - 중산층이상 가정과 업소에 대한 연탄사용 억제 홍보
 - 폐유, 페타이어, 폐고무등 불량연료 유통 규제
 - 동절기 특별대책기간 설정 및 감시단속 강화

나. 자동차로 인한 오염 감소대책

- 소형 경유자동차를 휘발유, LPG차로 대체
 - 1톤이하 경량차의 LPG엔진 대체추진
- 무연휘발유 자동차의 보급확대
 - 무연휘발유 자동차 보급율 : 34%→50%
- 대형차 연소농도기준 강화 및 단속 철저

다. 먼지 및 소음·악취방지

- 시멘트공장 및 저장장 먼지억제
 - 시멘트먼지 방지시설 및 자동감시망 설치
 - 저장장 및 연탄공장 먼지방지시설 강화
- 소음·진동 환경기준 설정 및 주요도시 방음벽 설치
 - 소음지역 현황 파악 및 방음벽설치 기본계획 수립
- 악취 다량배출업소 중점관리(대상 292개소)

라. 대기오염 자동감시망 운영

- 자동감시망 확충으로 환경수준 즉시 파악
 - 전국 13개 측정소 온라인화
 - 대구6, 광주4, 대전2, 원주1
- 오염우심지역 오염도 상시측정 및 규제
 - 연료감시모니터와 전산망 연결, 상시 점검

3. 폐기물처리체계 확립

- ◇ 폐기물관리제도 개선 및 처리시설의 확충
- ◇ 폐기물 적정처리로 생활공해 최소화

가. 수도권 쓰레기 해안매립지 건설

- 김포 간석지 630만평중 1단계 130만평 조성
- 환경청 주관, 서울·인천·경기도와 공동 추진

나. 전국 광역매립지 조성계획 추진

- 인접 시군이 공동사용할 위생매립지조성 기본계획 확정
 - 1차적으로 마산권 매립지 건설('88~'90)
 - 5만평 조성, 국고 25억원 지원

다. 산업폐기물관리 강화

- 유해성 폐기물 규제 강화
 - 재생이용질차 간소화로 감량화 유도
 - 유해 산업폐기물에 대한 공공처리 확대
- 산업폐기물의 수입 억제(4종→43종)
 - 수입금지 : 수은합유등 위해요소가 큰 품목(15종)
 - 선별허용 : 구리·납합유등 적용관리 필요품목(28종)

4. 환경행정추진기능의 제고

- ◇ 환경보전에 국민의 자발적 참여, 기업윤리 확립
- ◇ 관계시책의 종합조정기능 강화로 정부역할 제고

가. 환경보전의식의 생활화

- 대중매체와 협조체제 유지, 홍보 활성화
 - TV, 신문등 대중매체와 긴밀한 협조로 홍보효율화
 - 민간주도의 환경보전 홍보계도활동 강화
- 환경교육의 내실화 및 체계화
 - 공직자 및 관련 민간인에 대한 실무교육 내실화
 - 학교 환경보전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부교재개발

나. 환경관련 법체계의 정비

- 국가 환경정책방향정립을 위한 기본법 제정 추진
- 환경피해분쟁조정 및 방지사업비용부담법 제정 추진
- 전문적관리 및 규제수단 강화를 위하여 대기, 수질등 분야별 개별법화

다.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

- 환경영향평가시 주민참여방안 마련
- 평가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등 사후관리 강화

현안사항

1. 수도권 광역쓰레기 처리사업 추진

- 김포해안 쓰레기매립지 건설 사업계획 확정
 - 환경청, 서울시, 인천시, 경기도간 공동추진에 따른 세부사항 협정체결('89. 2. 2)
 - 관계기관 주요역할 분담
 - 사업수행 총괄: 환경청
 - 사업비 부담: 서울시, 인천시, 경기도
 - * 인구비율로 건설비 부담
 - 전용도로 건설: 서울시
 - 추진사항 협의 및 건설사업 집행기구 구성
 - 의사결정기구인 「수도권 해안매립 조정위원회」 구성
 - 환경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해당 자치단체 참여
 - 사업집행을 위한 「건설사업본부」 구성
 - 환경청 및 관계기관 전문인력 10인 내의
 - 제1단계로 130만평 공사 착수, '90년까지 완공
 - 매립지 운영관리는 「환경관리공단」이 담당
 -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 부담
 - 매립후 부지조성 수익금은 쓰레기 처리사업에 우선 사용

2. 배출업소 지도단속

- 오염물질의 다양화·악성화 추세로 불법배출 증가
 - 기업경영 인난 이유로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
 - 배출업소 관리의 이원화로 체계적인 지도단속 곤란
 - 허가, 지도단속, 행정처분관청 상이
 - 허가·지도단속 행정처분공단, 특정유해업소등: 환경지청 시·도
 - 기 타 업 소: 시·도 시·도
 - 행정차의 번잡, 민원불편, 행정력 낭비
 - 지도단속기능의 강화
 - 단속점검장비의 현대화
 - 매연단속용 고가 측정차 운용 및 비디오 감시등
 - 특별기동단속반 및 현지 점검반 확대 운용

- 유해물질 다량배출 및 민원유발업소 불시점검
- 주요 도시지역 상주점검반 확대 운용
- 단속결과 적발업소 행정처분 강화(고발, 조업정지등)
- 배출업소 관리체계 개선
 - 인허가, 지도단속, 행정처분권의 일원화
 - 공단 및 특정유해물질배출업소: 환경지청
 - 공단의 모든 업소: 시·도

3. 산업폐기물 관리

- 산업폐기물의 증가, 부적정 처리
 - 수입자유화에 따른 산업폐기물 증가(년 30만톤)
 - 재활용 후 잔여 폐기물 발생
 - 산업기술개발에 따른 유해폐기물 급증
 - 유해폐기물 발생 1일 1,900톤, 년평균 증가율 33%
 - 배출업소, 처리업자의 비용절감을 위한 부적정 처리
 - 발생량 1일 42천톤중 자가처리 62%, 위탁처리 38%
 - 관리대책 강화
 - 산업폐기물의 수입규제 철저
 - 수입금지, 선별허용 등 규제품목확대: 4종→43종
 - 실수요자에 한하여 수입승인 및 사용업소 집중관리
 - 배출 및 처리업소 지도단속 강화
 - 특별단속반 편성 운영, 수시 기동단속
 - 불법투기, 부적정처리, 불법유출등 중점단속
 - 관리체계 개선
 - 유해성폐기물의 종류 보완 및 공동처리시설 이용유도
 - 산업폐기물의 재생이용절차 간소화

4. 관련 법체계의 정비

- 현행 환경보전법과 같은 단일법체계의 난점
 -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의 구체화에 한계
 - 대기, 수질, 폐기물등 오염의 다양화에 대응 곤란
 - 다원화된 환경행정 상호간의 조정 미흡
 - 환경보전법을 “기본법”과 “분야별 개별법”으로 개편
 - 환경정책기본법 제도
 - 환경정책기본법향 정립 및 환경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 규정
 - 환경오염피해심사 및 분쟁조정법 제정
 - 피해분쟁의 공정한 해결과 적절한 피해보상 보장
 -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법 제정

- 정부와 민간, 사업자간의 비용부담원칙 정립
- 현재 환경보전법을 대기, 수질 분야별 개별법화
 - 오염분야 별 전문적 관리 및 규제수단 강화
- 추진계획
- 관계부처의 참여를 위한 의견조정, 상반기중 마무리
- 정책기본법과 개별법의 동시 제정 추진
- '89년 정기국회 일괄 상정 계획

국정감사 결과조치사항

사 항	조 치 내 용
○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	○ 제정추진중인 환경정책기본법에 주민참여방안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중
	○ 환경영향 평가내실화를 위한 평가서 작성지침 개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도로건설등 4개분야
	○ 평가결과 이행여부 확인등 사후관리 강화
○ 산업폐기물 처리업자 감독 강화	○ 처리업 허가조건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가매립지 확보업소에 한하여 허가
	○ 산업폐기물처리업소 일제지도 단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업정지 15, 시정지시 3
○ 환경성질환 대책마련	○ 공단지역 주민건강조사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구미 147명, 여천 128명
	○ 중금속, 유해물질 등 환경성질환 유발업소 특별지도단속
○ 김포 쓰레기매립지 조성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환경청주관 추진 	○ 서울시등 관계기관과 협의, 매립지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방향 확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주관—환경청 • 매립지조성비—자치단체 공동부담

○ 상수원 수질관리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운영관리—환경관리공단 ○ 금년중 제1공구 130만평공사 착수 ○ 상수취수원 수질측정망 확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71개지점→126개지점 ○ 호소수질 환경기준 강화 ○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현지조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수이용 및 오염원 분포현황 등 ○ 영향권역내 배출시설에 대한 허용기준 및 지도단속 강화
○ 산하기관·단체 운영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원재생공사 기능을 농촌폐기물수집 중심으로 개편 ○ 환경관리공단 경영합리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환경관련시설 수탁사업 운영 개선 • 기금관리 및 운영 철저 ○ 특채지양, 공개채용원칙 확립

'88년도 매출액 30대 기업산하 배출부과금 부과업체

'88년도 배출부과금 부과업체중 매출액 30대 기업산하 업체의 배출 부과금 부과실적은 아래와 같음.

— 아 래 —

그룹사별 배출부과금 부과 내역

(단위 : 원)

그룹명칭	계열회사 위반업체수	위반회수	배출부과금	비고
계	17	20	331,513,660	
대 우	3	4	1,531,560	
럭키금성	6	8	277,384,780	
삼 미	1	1	12,937,940	
삼 성	3	3	29,711,310	
쌍 용	1	1	3,080,930	
한 진	2	2	999,690	
현 대	1	1	5,867,450	